

aT센터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안전관리 지침

2021년

**aT**센터

##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매뉴얼은 전시출내 행사기간 중(설치, 행사, 철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전시장 사용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작업신고)

- ①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로 전시장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업종별 작업신고 시 제출서류
- ③ 작업신고 대상 업종

업종별	작업신고 시 제출서류	비고
전시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신고서, 시공 부스 도면 각 1부(3D컬러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전기도면, 구조검토계산서 (5m 초과부스, 중량물, 무대 등 설치 때에만 해당))</li> <li>· 선 방염일 경우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목공부스, 실사 천, 카펫 파이 텍스, 커튼류 등)</li> <li>· 후 방염일 경우 : 관할소방서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뢰 접수증 (목공부스만 해당)</li> </ul>	웹하드 작업신고
전기시설	· 작업신고서, 현장 대리인계 각 1부	
급배수설치	· 작업신고서, 급배수설치 위치 도면 각 1부	
광고시설물	· 작업신고서, 광고사인물 설치 시안 각 1부	
경비	· 경비원 배치신고서, 근무일지 각 1부	오프라인

- ④ 부스 작업신고는 온라인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http://www.webhard.co.kr>) / ID:ATSUBMIT, PW:coex1406!!) aT센터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작업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승인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aT센터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작업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승인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aT센터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나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변경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홀매니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aT센터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경우 전시참가업체 부스의 전시작동용 전력공 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3조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소화전과 비상구는 상시 사용 및 개방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전시스탠드는 기존시설물이나 이동식 칸막이 벽면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작업신고와 같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aT센터에 신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 승인건에 대하여도 작업현장에서 소방법규등에 위반되는 작업이 확인될 경우 홀매니저의 현장 시정 요구에 따라 수정, 재시공 하여야 한다.
- ④ 구조상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한다.
- ⑤ 각 연결부위는 각기 최대한 안전하게 체결하도록 한다.
- ⑥ 공사현장 작업자는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
- ⑦ 로딩 덕에서 2전시장으로 자재 반입 및 전시품 반입을 위한 화물 승강기는 차량 총중량 1t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화물E/L를 이용할 수 없다.
- ⑧ 전시회 준비를 위한 사전 마킹 작업시간은 마찰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간예, 당일 철거 때에는 야간 또는 조간 등 주최 측이 요청하는 시간에 부스 Lay-out 마킹, 전기간선 작업, 내부사인물, 바닥 카펫 & 파이텍스 등에 대한 사전작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동 작업 시간에 기본 오피셜 업체의 기본 자재 반입도 허용된다.

### 제4조 (시공업체의 방화관리 책임)

- ① 시공업체는 소방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해당 부스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 ① 수주한 용역의 제공은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하며 일괄 하도급 및 명의 대여는 금지한다.
- ② aT센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 제6조 (폐기물)

- ① 공사 중 발생한 공사폐기물은 설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쓰레기 처리장이나 기타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② 전시 준비, 행사 철거시 전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특정폐기물 쓰레기는 배출자가 직접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 특정폐기물 대상 : 스티로폼, 페비닐, 파이텍스, 코팅된 종이류, 목재류등 전시준비 및 철거시 발생하는 잔재물
  - 처리비용 :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처리한다
  - 특정폐기물 : 배출자(전시주최자, 공사업체)비용부담으로 처리업체에 위탁 또는 직접 처리
  - 일반폐기물 : 주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 장 업종별 시공뉴얼

### 제1절 전시디자인 설치 업종

#### 1-1 준비공사 시

#### 제7조 (일반사항)

- ①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독립 부스에 시공되는 목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후 방염일 경우 전문 방염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관할소방서/서초소방서의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뢰 접수증” 및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온라인 작업신고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선 방염 목재의 경우 표면 방염 처리한다. (단, 사안에 따라 앞면 및 뒷면 등 전체 방염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 비 방염 품은 전시장 내에 일체 반입을 할 수 없다.

- 천과 커튼류의 경우 선 방염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소방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결과 성적서(통보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염 증빙 서류는 작업신고 시 도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스 마킹 및 전시 부스 설치 시에는 기존시설물 좌·우 후벽 면 이동식 칸막이에서 아래 “부스 Lay-out 배치 시 준수 사항”을 참조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를 이격시켜 부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

**【부스 Lay-out 배치 시 준수 사항】**

구분	1전시장(1층)	2전시장(3층)	이동식 칸막이
출입구에서	3m이내 이격	3m이내 이격	30 ~ 50cm
좌, 우측 벽	1m 이격	1m 이격	”
후면 벽	1m 이격	1m 이격	”
후면 벽 (소화전, 비상구)	1m 이격	후면 벽 끝 지점에서 50cm 이격	”

④ 전시장내 소화전설비, 비상구, 전기 EPS출입문 및 화장실 입구는 전시 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부스 배정 시 상기사항이 장애가 될 경우 행사 준비 7일전까지 aT센터와 협의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전시장내 부스 시공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그 즉시 수거하여 당일 처리 한다.

⑥ 설치 업체는 주최자의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전기톱, 전기 대패, 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및 산소 절단기는 전시장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단, 전시장내 컴프레서는 단상 2kW 이하인 경우 사용이 허가되며 단상 2kW 이상은 작업 전원을 별도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천장이 막히는 전시 부스 구조의 경우 자동으로 소화 가능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당 1개 이상 필수)

⑨ 중량물 이동 및 자재 운반을 위한 작업 시 1전시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작업 크레인과 지게차의 하중은 4.5t 이하의 차량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전시장 내부 작업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⑩ 이벤트 행사 무대 시공 시 전시장 내부 제한 높이 5m 이상을 초과하면 반드시 사전에 홀 매니저와 협의 후 구조 전문기관의 구조진단계산서를

제출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T센터 지정등록업체 중 무대 시공 전문업체가 부재한 경우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무대 시공 관련 자체시공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외부 무대 시공 전문업체가 시공하도록 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 제8조 (천정)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전시 및 선전광고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배너 등 경량물일 경우, aT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 (시설물의 높이 제한)

전시장 내부 및 로비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초과하는 전시 부스를 설치할 수 없다.

구분		1전시장 (1층)	2전시장 (3층)	로비
제한 높이	전시 부스	5m	5m	2.5m 이하
	무대(내부)	7m	7m	-
		구조검토계산 제출		

### 제10조 (복층 공사)

aT센터 전시장에서는 복층구조의 전시 부스를 설치할 수 없다

### 11조 (통로)

- ① 전시 부스 통로 폭은 3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전시품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비상구, EPS 출입문, 소화전 설비 및 화장실 입구 부분에는 전시 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전시 홀별 후면 통로는 소방 피난 동선으로 일체의 화물이나 자재, 비품 등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면 소방통로 입구에 출입문 및 블라인드, 커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2조 (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 제한)

- ①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코자 할 때에는 위험물반입(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aT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T센터의 승인을 받은

출품 수량 외의 위험물을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 ② 승인 받지 아니한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법령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따라야 한다.
- ④ 전시장 내에서는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 ⑤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aT센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조립식 시스템 부스 공사)

- ① 구조상 흔들림이 심할 때는 보강하거나 버팀대 등을 추가 설치한다.
- ② 시스템 구조물이 내부의 조명 설치로 인해 변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구조물 이동 시 바닥이나 기존 시설물이 파손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제14조 (목재 공사)

- ① 목재의 공사는 외부에서 시공하여 전시장 내에서는 조립만 하여야 한다.
- ② 합판, MDF 등 전시구조물의 경우 내외부에 방염 처리하여야 하며 방염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샌드위치 패널, 스티로폼은 전시장 내 반입 및 시공 자재로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전시품의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③ 시트지, 벽지, 파이 텍스 시공의 경우 선 방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시장 내에서는 페인트 작업은 부분적 보수의 경우 aT센터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성 친환경 페인트만 가능)
- ⑤ 부득이하게 전시장 내에서 목재의 부분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aT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 ⑥ 전시장 내에서는 전동 톱이나 대패 및 분진을 유발하는 퍼티 사용 및 사포 작업을 할 수 없다.
- ⑦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반드시 공사업체가 직접 즉시 처리한다.
- ⑧ 유성페인트,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은 일체 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 ⑨ 가로 재의 경우 수직재나 브래킷에 얹히고 시공하여야 한다.
- ⑩ 구조물 철거 업체 작업자는 센터 안전규정을 준수 철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⑩ 전시구조물이 중량물일 경우 사전 협의에 따라서 필요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유리 공사)

- ① 구조물 중에서 유리는 철거 시 시공업체가 먼저 안전하게 수거반출 하여야 한다
- ② 상부에 설치되는 유리나 바닥에 설치되는 유리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강화 유리로만 시공하여야 한다. (유리에 안전유리 표시 필)

### 제16조 (조경공사,조형물공사)

- ① 물을 사용한 조경공사의 경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② 모래, 흙, 자갈 등을 사용할 경우 바닥 보양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7조 (중량물 공사)

- ① 중량물 공사(5Ton이상)의 경우 공사시행 7일전에 구조물(전시품)에 대한 제원을 aT센터(홀매니저실)에 제출, 구조계산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의 구조계산서를 제출 aT센터(홀매니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1전시장 (1층)	2전시장 (3층)	비고
제한 하중	1.5t / 1m <sup>2</sup>	1t / 1m <sup>2</sup>	
총중량	5t	4t	구조검토계산

- ② 중량물을 반입할 경우 중장비의 부양높이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③ 전시장 내부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지게차의 총중량은 4.5ton 이하의 차량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디젤 차량의 경우 매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수를 사용하도록 권장 개도하여야 한다. 중량물을 자체적으로 운전하여 반입할 경우 최대한 서행하여 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 (에어바운스 공사)

- ① 전시장 내 에어바운스 시공은 불가능하다.

### 제19조 (기타)

- ① 전시회 행사 시 장치공사 업체는 행사 당일 개문과 동시에 시공부스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② 장치물 철거 시 야간 당일철거의 경우 관람객 및 참가업체가 완전히 퇴장을 한 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철거 작업 전 반드시 압축공기, 급수, 전기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높이가 있는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반드시 전 방위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요원 배치 후 철거하여야 한다.

## 제2절 전기시설 업종

### 1-1 준비공사 시

- ① 전시장내 모든 전기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없다.
- ② 동력간선 시공업체는 전시 참가업체별 신청용량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 한다.
- ③ 부스에 부착하는 분전반은 내방객의 이동통로나 밀폐된 장소에 설치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 1.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개폐기가 함께 달려 있는 전기 공급 기준 장치로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전반 앞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철사, 철 파이프 등이 닿지 않도록 한다.
  - 2. 피복이 벗겨졌거나 갈라진 전선의 방치, 불량전기시설의 과도한 사용은 불량 퓨즈나 파손된 전기 스위치, 콘센트 등은 합선이나 누전의 원인이 되어 전기화재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노후 되고 파손된 전기스위치는 반드시 교체 시공해야 한다.
- ④ 국부조명 전력은 1㎡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할로겐 조명기구는 과열로 인해 코팅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전시장내 동력, 전열, 조명, 배선 Cable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60%이상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 ⑦ 220V 노출콘센트 설치 시 비접지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
- ⑧ 전시장내 배선공사 시 전기용량, 전압, 전류 관계없이 1V전선 및 PVC 비닐 코드선은 사용할 수 없다.
- ⑨ 부스에 공급할 메인 전원은 CASE 없는 노퓨즈브레이커(no fuse breaker)만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 ⑩ 부스 내 전열 및 조명 메인전원은 누전차단기(ELB)를 설치 시공한다.
- ⑪ 전기공사 시 자체시공 업체에 대하여 감리(발전차 제외)는 일체 할 수 없으며 전기시설 등록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단,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⑫ 전시동력 시공사는 행사 시 주최자가 정한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전시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⑬ 트렌치 커버 및 트렌치 홀 캡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⑭ 공사업체는 부스 내 24시간 전원 설치 공사 접수 시 작업신고서에 별도로 24시간 전원 사용량 및 용도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⑮ 통로 및 부스 내에 노출, 돌출되는 전기시설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마감 처리 하여야 하며 안전표시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⑯ 간선 작업 시 전선이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보호 덮개(덮개 상부 면에 안전보호색이 사선으로 처리된 안전 보호 덮개 / 고무판, 전선보호 덮개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간선 작업 완료 후에는 트렌치 커버 평탄화 작업을 시행하여 트렌치 커버의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 ⑰ 기타 전기시설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2 전시행사 시

- ① 간선 시공업체는 전시장 개문과 동시에 주최자의 승인 후 전력을 공급하고 부스별 전원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②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에 시공부스의 조명 및 전시동력을 확인 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처리한다.
- ③ 간선 시공업체는 전시 준비/행사 기간 및 종료 시 까지 전시장 내에 상주 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1-3 철거공사 시

- ① 야간 당일철거의 경우 관람객 및 참가업체가 완전히 퇴장을 한 후 철거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전시행사 종료 시 전시동력 차단 전에는 절대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철거 작업 중 램프를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행사용 자재 철거 시 기존시설물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홀매니저, 전기실과 사후조치를 협의한다.
- ⑥ 행사장내 트렌치를 정리하고 홀캡은 반드시 원위치 시켜야 한다.
- ⑦ 철거후 잔재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시공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절 카펫/파이텍스 업종

#### 3-1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카펫, 파이텍스, 타일카페트 등은 선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라텍스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된 테이프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카펫 시공으로 인하여 들뜸이나 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한다.
- ④ 보양비닐이나 테이프는 철거 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 ⑤ 시공 후나 철거 후에 파이텍스의 잔재물을 전시장이나 통로 등에 방치 할 수 없다.
- ⑥ 시공업체는 전시 중이라도 카페트와 파이텍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⑦ 파이텍스(카펫)에 라텍스 등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은 시공 할 수 없다.
- ⑧ 로비 작업 시에는 바닥 면 보호를 위하여 장치물 바닥 면에 반드시 파이텍스를 기본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⑨ 카펫이나 파이 텍스를 재활용하는 경우 기존 재활용 자재에 남아있는 접착재 잔재물로 인하여 전시장 바닥 면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시 주의 하여야 하며, 재활용 자재 접착재로 인하여 전시장 바닥 면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에게 오염된 바닥 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 할 수 있다. (청소 시공 및 원상복구비 청구)
- ⑩ 기본 부스 Lay-out 등 마킹작업 시 바닥 파이텍스 & 카펫의 사전준비작업을 일부 시행 할수 있다.

### 제4절 급배수/압축공기 업종

#### 1-1 준비공사 시

- ① 시공업체는 모든 시공자재를 KS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작업 신고 시 위치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 ② 급수배관 및 압축공기용 배관 자재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고압호스 연결 시 호스니플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스밴드는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 ④ 배관 및 호스 등 접속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 ⑤ 압축공기 호스와 전시품 기기 연결은 원터치 커넥터를 사용하여 한다.
- ⑥ 배수관은 가능한 짧게 시공하고 배관 내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 ⑦ 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퇴수밸브를 설치하여 급수를 퇴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한다.
- ⑧ 배관은 원칙적으로 트렌치 내부로 매립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립부에서의 이음매 접속은 피해야 한다.
- ⑨ 중간밸브는 비상 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도록 노출하여 고정 설치한다.
- ⑩ 시공업체는 전시기간 중 매일 전시 종료 시에 필히 중간밸브를 닫은 후 퇴실해야 한다.
- ⑪ 시공업체는 전시행사준비 기간부터 철거기간까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급배수 설비 및 압축공기설비 공급 담당 부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참가업체 사용자에게 비상연락처를 알려주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⑫ 급배수 시공자재 이외에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흡착포를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 ⑬ 시공업체는 급배수 배관 설치부터 철거까지의 모든 공정을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급배수 사용업체(참가업체)에게 안전사항을 충분히 공지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2 전시행사 시

- ①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에 급배수/압축공기 시공업체 부스에 누설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주최자의 승인에 따라 물과 에어를 공급한다.
- ② 시공업체는 행사기간 중 매일 행사 종료시간 직전에 설치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③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흡착포를 사용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현장에 차단봉을 설치하여 일반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④ 시공업체는 행사기간 중 대기하여 행사장내 상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 1-3 전시철거 시

- ① 급수를 차단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배수관 내에 물은 퇴수 조치한다.

- ② 배관 내 우유 등의 잔존물로 인해 전시장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 ③ 행사 종료 후 급배수 시공업체는 참가업체가 임의로 호수를 절단,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트렌치 내부에 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절 경비 업종

### 1-1 준비 공사 시

- ① aT센터가 권고하는 최소한의 인원 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
  - 1개관 기준, 4명 이상 배치
  - 전시준비 공사 전 근무자 배치신고서를 홀 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화재,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고 출입자를 선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③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흡연자를 통제하고, 이상 유무 발견 시 주최자 및 홀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순찰도중 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훼손 요인이나 행위가 발견 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홀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 ⑤ 중량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 차량의 진입 및 제한된 전동공구를 시공 할 때에는 즉시 중지시키고 홀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통제에 따른다.
- ⑥ 행사관련 발생하는 모든 특이 사항은 홀매니저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단정한 복장 및 바른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 ⑧ 근무일지는 익일 09:00시까지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전시중에 전시장 내부에서 발생한 쓰레기 및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연락, 쓰레기처리등 청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1-1 전시 행사 시

- ① 전시 개최기간 중에는 내방객 질서유지 및 친절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흡연자 통제, 화재, 도난 등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

- ③ 순찰 중 이상 유무 발견 시 홀매니저 및 주최자에게 즉시보고 하여야 한다.
- ④ 단정한 복장으로 및 바른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1-2 철거 공사 시

- ①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주차관리실과 협조하여 반출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순찰을 통하여 흡연자 통제, 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발견 되면 즉시 홀매니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철거종료 후 aT센터 청소측에 전시홀을 인계하고 철수 하여야 한다.

## 1-3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 ① 사고 발생 시 :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안내데스크(6300-1110)로 안내하며 중상일 경우에는 119구급차나 병원 구급차를 요청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사고자의 인적 사항과 사고내용,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즉시 홀매니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E/L, E/S 고장 시 : 중앙감시반(6300-1705)에 발견 즉시 신고하여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③ 화재 발생 시
  - aT센터 중앙감시반, 홀매니저, 주최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비상통로 확보 및 내방객을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한다.
  - 소화기 사용법, 화재종류에 대한 진압요령 숙지하여 초기에 신속 대응을 하여야 한다.

## 1-4 민원 발생 시 조치방법

- ① 소지품 분실 신고시 : 분실자의 인적사항, 분실장소, 분실시간 등을 기재하여 전 근무자 및 미화원, 주최자 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물 습득여부를 확인하고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시는 분실자에게 연락을 하여 분실물을 인계 한다.
- ② 미아발생 신고시 : 보호자가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미아 인적사항과 잃어버린 장소,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모든 근무자에게 전달 및 전시장 내 방송을 통하여 미아를 찾게 한다.  
또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아이의 이름 및 주소, 전화 번호,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이 안되면 주최자사무실에 연락하여 전시장 내 방송을 통하여 미아를 찾게 한다.

## 제6절 철거 업종

### 6-1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전시장 내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야간 당일철거의 경우 관람객 및 참가업체가 완전히 퇴장을 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작업 전 반드시 압축공기, 급배수, 전기 전원공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 ④ 목재 구조물 해체 시 바닥 충격에 유의하여 보양 후 해체 작업을 한다.
- ⑤ 집계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분진, 소음, 매연등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현장에서 목재 파쇄 금지)
- ⑥ 유리, 모래, 흙, 부스러기 등을 철거할 경우 바닥을 보양하고 시행한다.
- ⑦ 안전사고 발생 시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 ⑧ 잔재물이 남아 있을 경우 철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⑨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제7절 광고사인물 업종

### 7-1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사다리, 리프트카 등 고소장비 위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
- ② 행사별 전시홀 임대일정을 준수하여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전시홀 천정에 변형된 사인물 설치 시에는 사전에 훔매니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철선 사용을 자제하고 케이블타이 등을 사용하여 고정 한다.
- ⑤ 전시장 입구 현수막 시공 시 자석을 사용하여 부착(테이프 사용 금지)
- ⑥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하여 광장 가로등 배너를 시공 할 경우, 기존 가로등 페인트칠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후 설치 하여야 한다.
- ⑦ 철거 시 끈 등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광고안내시설물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광고안내시설물 설치 기준】** 참조

**【광고안내시설물 설치 기준】**

구분	종류	설치수량	규격	위치	비고
전시장 외부	외부배너 (복측)	3개	좌측, 우측 배너 (가로7m×세로12m)	전문전시장 외벽 배너설치 구조물	*전시회당 1개소
	가로등배너	25개조 (앞광장 16개조)	가로0.7m×세로2.5m	야외광장	* 2개 전시 경우 앞 광장 1전시당 8개조
	광장 입구 배너	1개	가로18m×세로 0.7m	전시장 입구	*2개 전시 경우 1전시 당가로9m×세로0.7m
전시장 내부	내부천정 배너	*수량 제한 없음 (전시주최자요청에 의거 안전성 고려 하여 승인)	1관 : 세로 4m 이내 2관 : 세로 5m 이내	전문전시장 내부 천장 Steel 격자	*천장배너 설치 시 통로상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스 상부에 설치 시 부스 상부와 배너 하부의 간격을 1m 이상
	빵빠레배너	-1관 전체사용시 : 12개(1층 전체) *2관 전체사용시 : 14개(3층 전체)	가로1.2m×세로2.5m (3m가능)	제1,2 전시장 앞 벽면에 부착된 규격 봉	*전시장 분할사용시 사용면적 비율로 설치개수 산출
	입구현판	*1관 전체사용시 : 2개소 *2관 전체사용시 : 2개소	가로8m× 세로 0.7m	전시장 출입구	*전시장 분할사용시 1개소
	안내유도 싸인	위치별 각 1개	가로0.6m×세로1.8m (단, 바닥 1m× 1m)	·동문앞 광장 ·동문 ·로비 ·에스컬레이터 옆(3층에 한함)	*옥내.외 홍보선전 (상징)탑 설치 불가
	3층 난간 배너	1개	가로 8.4m×세로 3.3m	3층 전시장 앞 난간	*3층 개최 전시회에 한함



## 제8절 가구비품 업종

### 8-1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항상 깨끗한 상태의 제품을 제공 한다
- ② 가구/비품 등의 손질을 위해 신나, 락카 등을 전시홀내 반입을 금지한다.
- ③ 임대 전시 홀 외의 장소에서 조립 및 적재할 수 없으며, 단 부득이 적재할 경우 사전협의 완료 후 홀매니저가 정하는 장소에 적재 하여야 한다.
- ④ 카트 운반 시 시설물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 ⑤ 행사 오픈, 철거 후 가구 집기는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 ⑥ 작업종료, 철거 후에 가구등 잔재물을 전시장이나 통로 등에 방치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용 불능 상태의 제품을 무단투기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향후 aT센터 전시회에 영업활동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절 가스설비 업종

### 9-1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시공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② 시공업체는 전시장 가스시설 사용 및 설치에 대하여 aT센터 시설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공업체는 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완성검사증명서를 aT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전시기간 중에는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 가스취급 자격소지자 이상의 유자격자가 선임을 하여야 한다.
  - 안전책임자는 가스누설 감지기를 소지하고, 수시로 누설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aT센터에 제출하여야하고, 이상시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전시기간 중에는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 ⑤ 가스 사용업소에 안전관리 사항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스사용 업소에 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주위에 안전과 위배되는 물건방치나 사용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가스 누설 시에는 자동경보와 자동차단기능이 작동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이를 필히 점검 하여야 한다.
- ⑦ 행사주최자는 반드시 행사보험에 가스 사용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⑧ 철거 후 반드시 홀매니저에게 철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절 운수통관 업종

#### 10-1 작업 시 유의 사항

- ① 보세전시장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5톤 이상의 전시물품 운송 시 사전 aT센터 승인 여부를 확인 후 반입 하여야 한다.
- ③ 전시품 하역 후 발생한 보세박스는 전시장내에 보관할 수 없으며, 하역장을 사용하되 사전에 홀매니저와 협의 지정장소 확보 후 운송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전시장 안전관리 평가 기준

#### 제19조 (공통 사항)

- ① aT센터는 지정등록업체가 전시장 사용 및 운영지침, 전시장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확인서, 경고, 출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붙임 세부 기준표 참조)
- ② aT센터는 명의대여로 인하여 민원이나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이에 협 조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작업자는 aT센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 (평가 시기)

- ① 등록업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한다. 제21조 (위반 점수 유효기간)
- ① 위반점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평가 내용 및 기준 / 붙임 세부 기준표 참조)

- ① 확인서(1건당 1~2점)
- ② 경고(3점)
  -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 점수 3점 또는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경상) 등

③ 출입정지(4점)

-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 점수 4점 또는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안전 사고 발생(중상) 등(출입정지 6개월 조치)

④ 등록제한(5점)

-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 점수 5점 또는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처분 확정일로부터 잔여 계약 기간 및 차기년도 1년간 aT센터 등록을 제한한다.

⑤ 등록취소 : 명의대여로 적발된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3년 동안 aT센터 등록을 제한 한다.

붙임 : 1. 업종별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 1부. 끝.

붙임)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전시디자인설치)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사다리, 리프트카 등 고소부위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2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바닥, 벽면, 천정, 기둥 등 훼손)	확인서	1
3	바닥 미 보양, 흡진 설비 등 안전조치 없이 퍼티, 연마(사포) 작업	확인서	1
4	소방시설 관련 법규 위반(소화전 폐쇄, 확산소화기 미설치)	확인서	1
5	작업신고서 미 제출(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6	전시장내 허가 없이 전동기구(전기톱, 그라인더) 사용	확인서	1
7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폐기물) 방치	확인서	1
8	오픈(준공) 청소 미 시행(전시장 통로로 배출)	확인서	1
9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10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11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12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서 미제출 (복층, 무대)	확인서	2
13	비방염 자재 시공	확인서	2
14	기한 내 미 부스 미 철거	확인서	1
15	신나, 유성페인트 등 위험물 반입, 토치, 용접작업 등 전시장내 위험물을 수반한 작업 시행	확인서	2
16	장치물 부스높이 제한 미 준수 (aT센터규정, 주최자규정)	확인서	1
17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8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9	전시장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기 행사 등 중대한 영향 초래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20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21	전기공사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사고 발생	확인서	1
22	부스공사 미 완료(공사 중단)로 인한 참가업체 행사 지장 초래	경고	3
23	등록업체 과실로 인한 전시구조물 붕괴,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	출 입 정 지 ~ 등록제한	4~5
24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전기시설)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간선 시공 시 현장 담당자 미 상주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 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사다리, 리프트카 등 고소부위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4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5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6	트렌치 캐브 미 설치	확인서	1
7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8	조명(램프) 파손 방치	확인서	1
9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10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1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12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3	시공 불량으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불꽃 및 연기 발생)	경고	3
14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인적·물적 중대한 피해 발생)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15	명의대여	등록취소	<b>3년간 등록제한</b>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카펫/파이텍스)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라텍스 본드 등 접착제 사용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 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승인되지 않은 테이프로 전시장 및 로비 바닥 접착 시공	확인서	1
4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으로 전시장 또는 로비 시공	확인서	1
5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6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7	공사 잔재물(카펫/파이텍스) 미 수거	확인서	1
8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9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10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1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2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13	비 방염 제품 시공	경고	3
14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aT센터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15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급배수)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현장 담당자 미 상주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 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트렌치 켈 원상복구 미 시행	확인서	1
5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7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8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누수 사고 발생	확인서	2
9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0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누수로 인한 타 행사 피해 발생)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11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경비)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근무자 복장 태도 불량, 업무 태만	확인서	1
2	적정인원 미 배치(1개 전시장 당 4명 이상)	확인서	1
3	사고 발생 미 보고	확인서	1
4	전동공구 유성페인트 사용 등 작업자 위반 사항 미 보고	확인서	1
5	근무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	확인서	1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철거)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2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5	잔재물(도배지, 출력물 등) 미 처리	확인서	1
6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7	철거 지연 및 주최자 민원 발생	확인서	1
8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9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10	폐기물 불법 처리	출입정지	5
11	특별한 외적인 요인 없이 철거업체 내부적인 문제로 철거 중단	경고	3
12	철거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aT센터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13	<b>명의대여</b>	<b>등록취소</b>	<b>3년간 등록제한</b>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광고사인물)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리프트카 등 고소부위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 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빵빠레 배너 등 고소부위 작업 시 사다리 이용하여 시공	확인서	1
4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5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7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8	행사 종료 후 미 철거	확인서	1
9	지정 장소 외 시공	확인서	1
10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1	광장 가로등 별도 거치대 시공 시 가로등 미 보양	확인서	1
12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13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aT센터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14	명의대여	등록취소	<b>3년간 등록제한</b>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가구비품)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2	행사 종료 후 가구비품 미 수거(폐 자재 포함)	확인서	1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5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7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aT센터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8	명의대여	등록취소	<b>3년간 등록제한</b>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가스)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유자격자(담당자) 전시장 미 상주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 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전시장 바닥 양카 시공	확인서	2
5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미 준수	경고	3
8	일일 가스안전점검체크리스트 미 제출	확인서	1
9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10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서 없이 가스 공급	출입정지	4
11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2	등록업체의 과실(폭발 사고 등)로 인하여 aT센터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b>3년간 등록제한</b>
13	명의대여	등록취소	<b>3년간 등록제한</b>

##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운수통관)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2	행사 종료 후 박스 등 자재 미 수거	확인서	1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5	행사 종료 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7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aT센터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5
8	명의대여	등록취소	<b>3년간 등록제한</b>